제234회 정례회
2004. 12. 20(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2월 7일(충청북도지사)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14일(제5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 심상결)

가. 제안이유

○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향추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자립·자활과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고 자활사업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% → 연 1%로,
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연 15% → 연 12%로
각각 하향 조정하고,

○ 지난 2004년 7월 2일자로 개정된「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」에 의거 "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"을 "기초생활담당사무관"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지용욱)

○ 금번 제출된 "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"은

-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자립의지가 강한 자활공동체에 융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,

- 자활공동체의 자활을 돕고,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운용대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9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향추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자립·자활과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고 자활사업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여자금의 이자율 하향조정 : "연3%"를 "연1%"로 함

나.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연체이자율 : "연15%"를 "연12%"로 함

다. "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"을 "기초생활담당사무관"으로 함

3. **의안전문** : 따로 붙임

4. **신구조문 대비표** : 따로 붙임

5. **관계법령 발췌**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중 "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%"를 "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%"로 하고"연15%의 연체이자"를 "연12%의 연체이자"로 한다.

제12조제2항중 "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"을"기초생활담당사무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사업자금대여)①~② (생략)	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사업자금대여)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%로 하되, 상환기관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%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	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1%·····연12%의 연체이자·····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생략)	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①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.	②·····기초생활담당사무관·····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8조(자활공동체) ①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(이하"공동체"라 한다)를 설립·운용할 수 있다.

제44조(보장기금의 적립)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제41조(보장기금의 설치) ①법 제4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(이하"기금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

제44조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①기금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시·도시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